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8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 박정현·김한규·이기헌

서미화 · 임미애 · 김현정

이해식 • 위성곤 • 문진석

이연희 · 복기왕 · 황명선

노종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교섭단체가 다를 경우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보장되 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한이 초과하 여 또는 거짓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음.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

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서류제출 등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이에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해 자료 요구 및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중에는"을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으로, "의장이"를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을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으로 한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 ②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3)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의 제 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 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과 협의하여----.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 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 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 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u>것을 요구할----</u>.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 설>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 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 <신 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제 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
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 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 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u>아니한</u> 경우, 같은 항 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u>이 경우 서뉴세술을</u>
<u>요구</u>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
서의 출석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활
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u>
⑥ · ⑦ (현행과 같음)